

조세 사면 법안
[Tax Amnesty Law]

2016. 7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조세 사면 법안 (Tax Amnesty Law) 요약

1. 일반 사항

□ 조세 사면 프로그램의 목적

-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의 가속화, 조세 개혁 촉진, 조세수입 증대

□ 조세 사면의 정의

- 이 법이 정하는 재산의 신고와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세금, 행정적 가산세, 조세관련 형사 처벌을 면제

□ 조세 사면의 신청자와 대상

- 모든 납세의무자 다만, 조세 분야 관련 검찰 수사 중이거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최종 과세연도 종료(15.12.31)시까지의 모든 납세의무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소비세)

2. 세율과 보석금 계산 방법

- 보석금 : 보석금 과세표준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은 순 재산가액, 순 재산가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가액 차감) × 세율

구 분 / 신청 기간	16.7.1~ 16.9.30	16.10.1~ 16.12.31	17.1.1~ 17.3.31
해외 재산을 신고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경우	4%	6%	10%
해외 재산을 신고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최소 3년간 투자하는 경우	2%	3%	5%
국내 재산을 신고하고 최소 3년간 투자하는 경우	2%	3%	5%
최종 과세연도(2015년) 총 수입금액이 48억 이하인 경우 (신고기간 : 시행일 ~17.3.31)			
신고 재산의 100억 루피아 이하까지			0.5%
신고 재산의 100억 루피아 초과분			2%

- 재산 신고서(SPHPP)에 기재한 재산과 부채의 가치 측정
 -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의 재무부 고시 환율로 루피아 환산
 - 현금성 자산은 액면 가액, 현금 이외의 자산은 공정가
 - 부채 가액은 해당 추가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채 (한도 : 법인 75%, 개인 50%)

3. 조세 사면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 요건

- 납세자번호(NPWP) 소유, 보석금 납부, 모든 미납세액 납부, 최종 소득세 신고서 제출, 모든 조세행정절차/불복절차 철회

□ 처리 절차

- 납세의무자는 재산 신고서(SPHPP)와 첨부서류를 등록된 세무서 등에 제출
- 재무부 장관은 조세사면 승인서(SKPP)를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발행
 - 납세의무자는 2017.3.31일까지 최대 3회까지 신고서 제출 가능
- 신고서 접수 수령증을 수취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진행 중인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위한 초동 증거 조사, 범칙 수사 중단

4. 조세 사면의 효과

□ 조세 사면의 혜택

-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과세기간의 미납세액, 가산세, 이자, 벌금 형태의 행정적 제재, 조세분야 형사처벌 면제
-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위한 초동 증거 조사, 범칙 수사 중단 또는 면제
- 조세사면 승인서에 기재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주식은 납세의무자 명의로 17.12.31일까지 명의이전 (관련 소득세 면제)

납세의무자의 권리 제한

- 최종사업연도 종료시점까지의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과다납부세액 이월/환급 불가, 수정신고 철회 또는 불가
- 조세사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진행 중이던 조세행정/불복 절차의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 효력 없음

5. 신고 재산에 대한 투자 의무

역외 재산의 이전 및 투자 실현

- 2% 또는 3% 세율 적용 재산은 2016.12.31일까지, 5% 세율 적용 재산은 2017.3.31일까지 재무부 지정은행을 통해 이전

투자 형태

- 인도네시아 국채, 국영기업(BUMN)의 회사채,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채권, 재무부 지정 은행에의 금융 투자, 민간회사의 회사채,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정부지정 실물 부문에의 투자, 그 이외 관련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형태의 투자

보고 의무 및 불이행에 따른 조치

- 기한내 역외자산을 국내 이전/투자하지 않거나, 국내소재 자산을 3년이내에 반출한 경우 16년 소득으로 간주, 과세, 가산세 부과

6. 미신고 제재 및 비밀유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재산 발견

- 신고 후 추가 발견 재산은 소득세 과세 및 200% 과태료 부과, 신고서 미제출 납세자는 재산 발견시 소득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

비밀 유지 의무

- 조세사면 관련 정보는 내사, 수사 및 형사 소추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포하거나 제공 불가 다만, 국세청의 과세를 위한 기초 자료로만 사용 가능

• • 목 차 • •

I. 일반사항

1. 조세 사면 프로그램의 목적
2. 조세 사면의 정의
3. 조세 사면의 신청자와 대상

II. 세율과 보석금 계산 방법

1. 보석금(Uang Tebusan) 세율
2. 보석금 계산 방법

III. 조세 사면 신청 및 처리 절차

1. 신청 요건
2. 처리 절차
3. 조사 및 수사의 중지

IV. 조세 사면의 효과

1. 조세 사면의 혜택
2. 납세의무자의 권리 제한

V. 신고 재산에 대한 투자 의무

1. 역외 재산의 이전 및 투자 실현
2. 보고 의무 및 불이행에 따른 조치

VI. 기타 행정 규정

1. 세무상 처리
2.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재산에 대한 처리
3. 소송
4. 자료 및 정보의 관리

I 일반 사항

1. 조세 사면 프로그램의 목적

- 국내 유동성 강화, 루피아 화폐 가치 개선, 이자율 감면, 해외 소재 자산의 국내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의 가속화
- 세원 확대를 통해 공정한 조세 시스템 구축 등 조세 개혁 촉진
- 국가 발전 건설 자금의 조달을 위한 조세 수입 증대

2. 조세 사면의 정의

- 이 법에서 정하는 재산의 신고와 보석금(Redemption Money, Uang Tebusan)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행정적 가산세,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

3. 조세 사면의 신청자와 대상

□ 신청 대상자

- 모든 납세의무자는 조세사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만, 다음의 납세의무자는 제외

- 조세 분야 관련 검찰 수사 중인 자
- 조세 분야 관련 재판 등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조세 분야 관련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자

* 모든 납세의무자는 조세사면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내,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음. 즉 조세사면을 받을 권리가 있는 납세의무자라 함은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이며 만약 납세자번호(NPWP)가 없는 경우 먼저 사업장 소재지 혹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번호를 등록하여야 함

□ 조세 사면 대상

-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까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모든 납세의무
 - 조세사면을 위한 재산 신고서(Surat Pernyataan Harta untuk Pengampunan Pajak/SPHPP)에 기재한 재산
- 대상 세목
 - 소득세(PPH), 부가가치세, 사치품 소비세

II 세율과 보석금 계산 방법

1. 보석금(Uang Tebusan) 세율

구 분	신청 기간		
	16.7.1~ 16.9.30	16.10.1~ 16.12.31	17.1.1~ 17.3.31
해외 재산을 신고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경우	4%	6%	10%
해외 재산을 신고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최소 3년간 투자하는 경우	2%	3%	5%
국내 재산을 신고하고 최소 3년간 투자하는 경우	2%	3%	5%

최종 과세연도(2015년) 총 수입금액이 48억 이하인 경우 (신고기간 : 시행일 ~17.3.31)	
신고 재산의 100억 루피아 이하까지	0.5%
신고 재산의 100억 루피아 초과분	2%

2. 보석금 계산 방법

□ 보석금 산출

- 보석금은 보석금 과세표준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보석금 과세표준은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은 순 재산가액이며, 순 재산 가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 최종 과세연도의 최종 소득세 신고서란

- 과세연도가 2015.7.1일에서 12.31일 사이에 종료하는 경우 2015년도 소득세 신고서
- 과세연도가 2015.1.1일에서 6.30일 사이에 종료하는 경우 2014년 소득세 신고서

□ 순 재산 가액의 산정

- 재산 신고서(SPHPP)에 기재한 재산과 부채의 가치 측정

재산과 부채	가치 측정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이미 포함된 순 재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루피아화로 기재된 가액 · 루피아화 이외의 화폐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의 재무부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루피아화로 환산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재산과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성 자산은 그 액면 가액을 루피아화로 산정하고 현금 이외의 자산은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의 공정가로 결정 · 루피아화 이외의 화폐인 경우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의 재무부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루피아화로 환산

○ 추가 재산과 관련된 부채 가액은 해당 추가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채로서 아래 한도 내에서 인정

- 법인 납세의무자는 추가 재산가액의 최대 75%까지
- 개인 납세의무자는 추가 재산가액의 최대 50%까지

< 보석금 계산 사례 >

A씨는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의 국내 반입을 위해 조세사면 제도를 이용하기로 함. 그러나 2015년도 최종 소득세 신고서상에 B씨는 인도네시아 국내 소재 재산만 다음과 같이 신고함.

- 재산가액 150억, 부채가액 50억, 순재산가액 100억

조세사면법 시행후 첫 3개월 이내에 B씨는 조세사면 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신고함.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총 재산가액 500억
 1. 최종 소득세 신고서상 재산가액 150억
 2. 최종 소득세 신고서상 미 신고된 재산 350억중
 - a) 국외에 소재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내로 반입할 재산 120억
 - b) 국외에 소재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내로 반입하지 않을 재산 230억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총 부채가액 140억
 1. 최종 소득세 신고서상 부채가액 50억
 2. 최종 소득세 신고서상 미 신고된 부채 90억중
 - a) 인도네시아 국내로 반입할 재산과 관련된 부채 30억
 - b) 인도네시아 국내로 반입하지 않을 재산과 관련된 부채 60억
- 조세사면 신고서 제출 시점의 순 재산가액(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로 반입할 순 재산가액은 120억 - 30억 = 90억
 2. 국내로 반입하지 않을 순 재산가액 230억 - 60억 = 170억

조세사면법 시행후 첫 3개월동안에 신고된 조세사면 신고에 따른 보석금의 세율

1. 국내 반입재산 2%
2. 국내 미반입 재산 4%

따라서 보석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반입재산 90억 × 2% = 1억 8천
 2. 국내 미반입재산 170억 × 4% = 6억 8천
- 총 보석금 납부할 금액 = 1억 8천 + 6억 8천 = 8억 6천

Ⅲ 조세 사면 신청 및 처리 절차

1. 신청 요건

□ 조세사면 신청자의 자격 요건

- 납세자번호(NPWP)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보석금(Uang Tebusan)을 납부할 것
- 모든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
-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 또는 범칙조사에서 확인된 미납 세액 또는 과다 환급신청 세액을 납부할 것
- 최종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 * NPWP는 보유하고 있으나 최종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최종 소득세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하며 2016년 이후 신규로 NPWP를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최종 소득세 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현재 진행 중인 다음의 절차를 모두 철회하여야 함
 - 과다납부 세액 환급신청
 - 세액 확정 통지서 및 징수 결정서의 가산세 감면/취소 청구
 - 세액 확정 통지서 및 징수 결정서의 본세 감면/취소 청구
 - 이의신청
 - 세액 확정 통지서 및 결정문의 수정 청구
 - 조세소송(Banding)
 - 행정소송(Gugatan), 대법원 상고

- 조세사면 재산을 인도네시아 국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위 조건이외에 해당 재산을 다음 기간 내에 국내로 이전하여 그 재산을 최소 3년간 국내에 투자하여야 함
 - 2%, 3%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는 2016.12.31일 이전
 - 5%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는 2017.3.31일 이전
- 인도네시아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조세사면 승인서(SKPP)가 발행된 날로부터 최소 3년간 그 해당 재산을 국외로 이전할 수 없음

□ 조세 사면 재산 신고서(SPHPP) 기재사항

- 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NPWP, 여권 번호 등), 재산, 부채, 순 재산, 보석금의 계산 내용을 기재
 - 동 신고서는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함
 - a. 개인 납세의무자
 - b. 법인 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법인 정관) 또는 동등한 타 서류에 기재된 최고 고위직 또는 최고 고위직이 업무수행에 제약이 있을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
- 신고서 첨부 서류
 - 보석금 납부증빙(SSP)
 - 체납자의 경우 체납 세액 완납 증빙
 - 신고하는 재산의 세부 명세와 소유에 관한 증빙 (소재지, 취득연도, 소유증빙 일련번호)

- 부채 명세와 입증 서류 (공증인에 의하여 확인된 금전대차 계약서 및 채무 확인서 등)
-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 또는 범칙조사에서 확인된 미납 세액 또는 과다 환급신청 세액의 납부 증빙
- 최종소득세 신고서 사본
- 현재 진행 중인 조세와 관련된 각종 이의신청/소송 절차를 철회한다는 확약서
- 재산을 국내로 이전하는 납세의무자는 최소 3년간 재산을 국내에 투자한다는 확약서
- 국내 소재 재산을 신고하는 납세의무자는 최소 3년간 해당 재산을 국외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 최종 과세연도 총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미만인 납세의무자는 총 매출액에 대한 확약서

2. 처리 절차

- 납세의무자는 신고서(SPHPP)를 등록된 세무서 또는 재무부 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제출
 - 납세의무자는 보석금을 납부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
- 장관 또는 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무부 장관 등)는 조세사면 승인서(Surat Keterangan Pengampunan Pajak / SKPP)를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발행
 - 10 영업일 이내 조세사면 내역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조세사면 승인서가 발행된 것으로 간주

- 재무부 장관 등은 다음의 경우에 조세사면 승인서에 대한 수정 승인서를 발행
 - 조세사면 승인서에 오기가 있거나 계산 오류가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경우 2017.3.31일까지 최대 3회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기 제출된 신고서의 재산을 감액하거나, 미 신고된 추가 재산을 추가 신고하기 위하여
 - 당초 국내로 반입하기로 신고한 재산을 반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보석금 계산의 변경이 발생한 것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기 위하여
 - 당초 국내로 반입하지 않기로 신고한 재산을 반입하기로 결정하여 보석금 계산의 변경이 발생한 것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기 위하여
 - * 위에 언급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석금의 세율은 변경됨
- 2차 신고서와 3차 신고서는 이전 신고서에 대하여 조세사면 승인서가 발행된 이후에 제출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가 2차 또는 3차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석금의 과세표준 계산은 이전 신고서에 대한 조세사면 승인서에 기재된 보석금을 감안하여 계산

예)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사면 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 a. 2015년 12월 31일 기준 순 재산가액 150억
- b. 최종 소득세 신고서상의 순 재산가액 50억
- c. 보석금 과세표준 150억 - 50억 = 100억
- d. 납부하여야 할 보석금 100억 × 2% = 2억

- 첫 번째 신고서에 대하여 보석금 2억을 인정하는 조세사면 승인서가 발행됨
추후 납세의무자는 조세사면 법안이 시행된 날로부터 16.10.1일부터 16.12.31일까지의
기간 안에 2015년 12월 31일의 순 재산가액이 350억이라고 2차 신고서를 제출
 - a. 당초 최종 소득세 신고서의 재산가액 50억임
 - b. 보석금 과세표준은 350억 - 50억 = 300억
 - c. 1차 조세사면 신고서에 대한 승인서에 기재된 보석금 과세표준 100억
 - d. 2차 신고서의 보석금 과세표준 300억 - 100억 = 200억
 - e. 납부하여야 할 보석금 200억 × 3% = 6억

두 번째 신고서에 대하여 보석금 6억원을 인정하는 조세사면 승인서가 발행됨

- * 만약 납세의무자가 1차 신고서 제출과 같은 기간내에 2차 조세사면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보석금의 세율은 1차 신고서가 제출된 기간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석금의 과다 납부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과다 납부금은 수정 승인서가 발행된 날 또는 2차, 3차
신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최장 3개월이내에 환급되거나 다른
납부세액에 충당됨

- 계산 착오로 수정 승인서가 발행된 경우
- 2차 또는 3차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3. 조사 및 수사의 중지

- 조세사면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세사면 승인서
발급 전까지 신고서의 접수 증빙으로 수령증을 발급
- 수령증을 수취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최종 과세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위한 초동 증거
조사, 범칙 수사를 할 수 없으며, 진행중인 조사는 중단되며,
조세사면 승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는 종료됨

IV 조세 사면의 효과

1. 조세 사면의 혜택

□ 납세 의무 면제

-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과세기간의 모든 납세 의무에 대하여 세액 확정 통지서가 발행되지 않은 미납세액, 가산세, 조세분야 형사처벌 면제
-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과세기간의 이자, 벌금 형태의 행정적 제재 면제
-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과세기간의 모든 납세 의무에 대하여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위한 초동 증거 조사, 범칙 수사 면제
-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과세기간의 모든 납세 의무에 대하여 이미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위한 초동 증거 조사, 범칙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중단

□ 기타 인센티브

- 조세사면 승인서에 기재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주식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권리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납세의무자 명의로 명의이전(개서)하여야 함
- 다음의 조치를 17.12.31일까지 마치는 경우 관련 소득세 면제
 - 권리 이전 신청
 - 권리 이전 신청을 제출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 동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라는 것을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공증인에 의해 증명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2. 납세의무자의 권리 제한

□ 권리 제한

- 최종사업연도 종료시점까지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음
- 최종과세기간 종료시점까지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 부가세, 사치세의 과다 납부세액을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음
- 최종과세기간 종료시점까지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 부가세, 사치세의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음
- 동 법 공포 이후로 최종과세기간 종료시점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부가세, 사치세의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 기 접수한 수정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진행중인 조세행정/불복 절차의 효력

- 최종과세기간 종료시점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확정통지서, 조기환급 통지서, 수정결정서, 세액확정감액 결정서, 세액확정 취소결정서, 이의신청 결정서, 조세소송 판결문, 행정소송 판결문, 대법원 재심 판결문의 경우
 - 조세사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최종 결정이 발급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체납처분을 하거나 과다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 납세의무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는 것,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세액을 이월 공제하는 것에 효력을 미치지 않음
 - 조세사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유지됨. 다만 해당 환급 가산금 (Interest)은 지급되지 않음

V 신고 재산에 대한 투자 의무

1. 역외 재산의 이전 및 투자 실현

□ 이전 기한

- 납세의무자는 역외 신고 재산을 재무부에 의해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다음의 기한 이내에 반드시 이전하여야 함
 - 2% 또는 3% 보석금을 납부하는 추가 신고 재산은 2016. 12.31일 까지
 - 5% 보석금을 납부하는 추가 신고 재산은 2017.3.31일 까지
- 최소 3년 이상의 투자 기간은 재산이 인도네시아 역내로 반입된 날로부터 기산함

□ 투자 형태

- 인도네시아 국채
- 국영기업(BUMN)의 회사채
-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채권
- 재무부 지정 은행에의 금융 투자
- 금융감독위원회(OJK)에 의해 거래가 감독되는 민간회사의 회사채
- 정부와 민간 협력사업 방식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 재무부 결정에 따른 정부 우선 순위 실물 부문에의 투자
- 그 이외 관련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형태의 투자

2. 보고 의무 및 불이행에 따른 조치

□ 보고서 제출

- 납세의무자 또는 지정된 수입자는 재무부 장관 등에게 다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역외 재산을 이전하는 납세의무자는 인도네시아 역내로 반입할 추가 재산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실현 방법
 - 재산을 국외로 이전할 수 없는 납세의무자는 인도네시아 역내에 소재하는 추가 재산의 소재

□ 의무 불이행

- 재무부 장관 등은 다음의 경우에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동 경고장에 대하여 발송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가 역외 재산 이전 기한내에 인도네시아 역내로 재산을 반입하여 투자하지 않은 경우
 - 국내 재산을 최소 3년 동안 인도네시아 역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납세의무자의 회신 의견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조세사면 신고서에 포함된 추가 재산의 순 재산가액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2016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가산세를 부과
 - 기 납부한 보석금은 소득세 계산 시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
 - 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동 법 11조에 언급된 조세사면의 규정은 계속 유효

VI 기타 행정 규정

1. 세무상 처리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장부기장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조세사면 신고서의 순 재산가액에서 최종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서의 순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차대조표 상 이익 잉여금에 가산하여 기재함
- 조세사면 신고서에 기재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은 세무적인 목적을 위하여 감모/감각 상각할 수 없음

2.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재산에 대한 처리

- 납세의무자가 조세사면 승인서를 수령한 이후에 조세사면 신고서에 미기재 또는 과소 기재된 재산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재산은 그 재산이 발견된 시점에 획득한 추가 소득으로 간주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고 과소 납부 세액의 200%를 과태료로 부과함
- 동 법 시행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조세사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1985.1.1일 이후부터 2015.12.31.일 사이에 취득한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 해당 재산은 그 재산이 발견된 시점에 획득한 추가 소득으로 간주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함

3. 소 송

- 동 법 시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조세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해결됨

4. 자료 및 정보의 관리

□ 비밀 유지 의무

- 조세사면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근거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재무부 또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다른 기관에 의하여 관리되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사, 수사 및 형사 소추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
 - 재무부 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관리함
- 재무부 장관, 차관, 직원과 조세사면의 시행을 위한 관계 부처는 납세자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포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납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는 누구에 의하여도 요청될 수 없고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도 제공될 수 없음
-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와 정보는 국세청의 과세를 위한 기초 자료(DB)로만 사용될 수 있음

□ 형사 처벌

- 장관, 차관, 재무부 직원과 조세사면의 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직원은 관련 업무의 집행이 동 법에 따라 적법하고,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조세사면의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내사, 수사, 소송,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함
 - 동 형사처벌은 비밀유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처해짐